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,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,

경감 인원 증가 및 이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하고자 경정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소속기관등에서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와 더불어 승진시험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가산점 제도의 폐지(현행 제11조제3항 삭제)

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소지·학위 취득 등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.

나. 경정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(안 제28조)

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승진시험 실기권의 범위를 경감에서 경정으로 확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2023. 09. 22. ~ 10. 31.)

대통령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경감”을 “경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) ①·② (생략) ③ <u>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.</u> 1. <u>삭제</u> 2. <u>삭제</u> 3. <u>자격증 소지자</u> 4. <u>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</u> 5. <u>재직 중 학사·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</u> 6. <u>삭제</u> ④ ~ ⑧ (생략)	제11조(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시험 실시권의 위임)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<u>경감</u>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	제28조(시험 실시권의 위임) ----- ----- <u>경정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인사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1239